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7.7.10(월) 10:00

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전문위원 유지영

#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## 3. 제안 이유

- 신청대상 직종이 다양하고 매년 신청자가 다른 상황에서 종전 위촉된 심사위원의 직종으로 전문적·체계적인 심사가 어렵고
-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의결에 따른 심사위원의 소집 부담을 덜고자위원의 임기를 명장이 선정됨과 동시에 해촉 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선정대상 직종에 대한 대상자 범위의 문맥 조정(안 제3조 제2항)  
- 선정대상 직종을 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함.
- 나. 심사위원의 회의소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"취소" 삭제(안 제9조 제1호)
- 다. 위촉위원의 임기(2년 연임)을 "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." 로 함(안 제10조 제2항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정부가 고시한 명장의 직종이 기계, 재료, 항공, 공예, 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위촉된 심사위원은 최대 4년간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명장의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의 직종으로는 전문적·체계적 심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안 제10조의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또한 안 제9조 제1호 '명장선정·취소에 관한 사항' 중 취소는 기존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